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186호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3 0 1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관리 과 2
- 공 고 제 2 3 1 4 호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 시 재 생 과 3

고 시

- 고 시 제 2 1 3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구월동 1455번지) 공 동 주 택 과 5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230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6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의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서(독촉장)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함 보관의 사유로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 12. 12.

남 동 구 청 장

1. 공고명: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과징금: 원)
박*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93	정비책임자 미선임	300,000

※ 과징금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 가능함

3. 공고 기간: 2025. 12. 12. ~ 2025. 12. 29.

4. 공고내용

가. 납부 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부과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1의2]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납부 기간 경과 시 체납처분 진행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의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032-453-2827)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2314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2. 12.

남 동 구 청 장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5. 12. 15. ~ 12. 29.(15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내역

위반행위자	불법행위 내역				
	위치	행위 내용	구조	위반면적(㎡)	이행강제금(원)
유○○	운연동 459-54, 459-63, 508-7, 458-16, 459-4, 459, 458-9	불법형질변경	성토	800	30,540,000

4.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

(☎ 032-453-2975, FAX 032-453-2959)

5. 기타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로 의견 제출하기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5-2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12.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변경없음)

○ 인천구월동 복합시설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주)하나자산신탁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3. 사업내역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 대지면적 : 12,397.42㎡(사업면적 12,458.72㎡ - 도로제척면적 61.3㎡)

○ 연 면 적 : 140,845.79㎡

○ 사업규모 : 지하6층/지상39층, 4개동, 496세대

○ 건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 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2월 20일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년 12월 12일

4. 주요 변경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 세대수 및 층수 증가
- 부대·복리시설 : 위치 변경
- 그 외 시설 : 용도변경(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등

5. 변경 전·후

구 분	사업승인(24.12.20.)		변경승인(25.12.12.)		증·감
건축면적	7,361.7402㎡		7,433.9389㎡		72.1987▲
연 면 적	135,352.72㎡		140,845.79㎡		5,493.07▲
동 수	4개동, 지하 6층 ~ 지상 33층 _(103·104동) 지상 37층 _(101·102동)		4개동, 지하 6층 ~ 지상 35층 _(103·104동) 지상 39층 _(101·102동)		2개층▲
세 대 수	480세대		496세대		16세대▲
용 도 별 면 적	공 동 주 택	88,868.44㎡	공 동 주 택	93,214.79㎡	4,346.35▲
	근린생활시설	44,478.71㎡	근린생활시설	45,701.55㎡	1,222.84▲
	문화및집회시설	2,005.57㎡	운동시설	1,929.45㎡	용도변경
공동주택 타 입	84A㎡(36평)	240세대	84A㎡(36평)	248세대	8세대▲
	84B㎡(36평)	240세대	84B㎡(36평)	124세대	116세대▼
	-	-	101㎡(43평)	124세대	124세대▲

6.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

7. 관계도서는 우리 구 공동주택과(☎032-453-64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